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1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오세희 · 김재원 · 홍기원
민병덕 · 박정현 · 강경숙
김의겸 · 강준현 · 이수진
한준호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 · 장례식 · 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부는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이하 “플라스틱 조화”라 한다)이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이하 “플라스틱 조화”라 한다)이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u>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u>
--	--